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70-4143-0066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경기도 안산시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현재 해당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6.11.(수)	2025.06.16.(월)	2025.06.17.(화)	2025.06.20.(금)	2025.06.24.(화) ~2025.06.25.(수)	2025.06.27.(금) ~2025.06.29.(일)

###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년 2월 준공되어 보존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로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 여건, 주변시세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취소세대이며, 준공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현재 상태로 분양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 동호를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약체결 대상자에 한하여 동호 개방 예정)
-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 알선을 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을 때(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 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아파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이미 공사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여부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반드시 현장 주변 및 입지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nsanbp.blogspot.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1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22**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3.24.(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311**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접수	일반공급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6.16.(월)	2025.06.17.(화)	2025.06.20.(금)	2025.06.24.(화)~2025.06.25.(수)	2025.06.27.(금)~2025.06.29.(일)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라성로 15, 안산브리파크 상가 125호)</li> </ul>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안산시 단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주택과-15478호(2025.6.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5(원곡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최고층수 38층 10개동 총 1,714세대(총주차대수 2,075대, 세대당 1.21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8세대, [특별공급 1세대(신혼부부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8월 예정(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약 후 60일 이내. 단, 잔금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부부	계	
2025930022	01	049.7492	49	49.7492	22.2997	72.0489	32.7469	104.7958	29.3472	5	1	1	4
	02	059.7615B	59B	59.7615	22.0959	81.8574	39.3375	121.1949	33.3425	3	-	-	3
	합 계									8	1	1	7

※ 상기 면적은 준공면적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계획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세대수	합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	1
합 계	1	1

#### ■ 공급금액 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가전 옵션) 금액 별도]

(단위: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연번	동	호수	분양가				계약금 (10%)	잔금(9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지비	건축비	부대경비	공급금액(계)		
049.7492	49	01	103	2001	121,341,000	193,259,000	15,990,000	330,590,000	33,050,000	297,540,000
		02	107	3302	121,958,000	194,242,000	16,020,000	332,220,000	33,220,000	299,000,000
		03	109	0405	114,244,000	181,956,000	15,920,000	312,120,000	31,210,000	280,910,000
		04	109	2505	121,341,000	193,259,000	16,000,000	330,600,000	33,060,000	297,540,000
		05	109	3105	121,958,000	194,242,000	16,030,000	332,230,000	33,220,000	299,010,000
059.7615B	59B	06	104	3003	146,990,000	234,110,000	16,640,000	397,740,000	39,770,000	357,970,000
		07	106	3303	146,990,000	234,110,000	16,630,000	397,730,000	39,770,000	357,960,000
		08	107	3305	146,990,000	234,110,000	16,650,000	397,750,000	39,770,000	357,980,000

※ 본 아파트는 준공완료단지로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대금 납부계좌(계약금 및 잔금)	신한은행	100-034-400738	원곡연립1단지주택재건축조합(외1)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연번	동	호수	발코니확장공사비	계약금 (10%)	잔금(90%)
						계약시	잔금납부일
049.7492	49	01	103	2001	9,400,000	940,000	8,460,000
		02	107	3302	9,400,000	940,000	8,460,000
		03	109	0405	9,400,000	940,000	8,460,000
		04	109	2505	9,400,000	940,000	8,460,000
		05	109	3105	9,400,000	940,000	8,460,000
059.7615B	59B	06	104	3003	12,500,000	1,250,000	11,250,000
		07	106	3303	12,500,000	1,250,000	11,250,000
		08	107	3305	12,500,000	1,250,000	11,250,000

■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계약금)	KB은행	626401-01-528942	(주)대우건설

※ 잔금납부 계좌는 계약후 가상계좌 부여 예정입니다. 계약자께서는 잔금 납부전 계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 옵션(시스템에어컨) 금액

(단위: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동	호수	품목	설치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90%)
								계약시	잔금납부일
049.7492	49	109	0405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 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109	2505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 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109	3105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 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059.7615B	59B	104	3003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 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106	3303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 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107	3305	시스템에어컨	2대	거실, 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 가전옵션(시스템에어컨) 대금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대금 (계약금 및 잔금)	기업은행	986-001066-01-041	(주)호감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신혼부부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b>구분</b>	<b>처리방법</b>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당첨자발표일이 늦은</b>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접수일시가 늦은</b>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모두 <b>부적격</b> 처리</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li> <li>-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33%;">입주자모집공고일</th> <th style="width: 33%;">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 style="width: 33%;">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r> <td>2025.06.11.</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r>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6.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li> </ul>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6.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able>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40% 이하	~10,087,437원	~12,009,323원	~12,643,467원	~13,626,320원	~14,609,174원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p>※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p>※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인(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p>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p><b>당첨자발표 서비스</b></p>	<p><b>청약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5.06.20.(금) ~ 2025.06.29(일)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p><b>문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5.06.20.(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계약체결 장소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본인	-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도장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 12. 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계약체결 장소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전자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예정)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청약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 참조
		○	기본증명서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서		- 계약체결 장소 비치 (근로자 및 자영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서 제출시 홈택스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기존주택처분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청약자 본인외 모두 제3자 - 용도 : 자격확인서류 제출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 절대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사전 준비)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불법행위재공급 모집공고일[2025.06.11.(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상기 구비서류가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당첨자의 적격 검증을 위하여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 일반공급	일시 : 2025.06.20.(금) 장소 :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5, 브리파크상가 125호	일시 : 2025.06.24.(화) ~ 2025.06.25.(수) 장소 :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5, 브리파크상가 125호	일시 : 2025.06.27.(금) ~ 2025.06.29.(일) 장소 :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5, 브리파크상가 125호

※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취소세대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상기 구비서류가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당첨자의 적격 검증을 위하여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9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분양가측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측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3.24.(화))을 확인하시어 모든 유의사항 및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 기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전에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원곡연립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위원회	(주)대우건설
법인등록번호	131471 - 0018412	110111 - 2137895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66, 303호(선부동, 신한빌딩)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 홈페이지 주소 : <https://ansanbp.blogspot.com/>
- 현장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5,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상가 125호
- 분양문의 : 070-4143-0066
-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